

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14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4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,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빗물 등을 생활용수 및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 규정.
-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(안 제3조)
 - 시장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규정.
- 중수도의 설치 및 신고(안 제4조)
 - 조례로 규정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 결과 신고 등에 관한 사항.
-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(안 제5조)
 - 재처리수의 공급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범위에서 사용량에 따라 산정.
-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(안 제6조)
 -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 소유자(관리자), 재처리수를 공급받는자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.
- 시범사업 발굴, 교육·홍보, 시행규칙(안 제7조 ~ 제9조)
 -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, 사업비용의 보조 등 물 재이용 시책 추진.
 -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

- 제정조례안 : 붙임1
-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있음(1건)
 - 입법예고 : 2018. 2. 8. ~ 2018. 2. 28. (20일간)

- 기타 참고사항
 - 입법예고 결과 : 붙임3
 - 방침결정문 : 붙임4

< 불임 1 >

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와 같다.

제3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위치, 면적, 지형,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
2. 인구, 하천 이수, 물 재이용 산업,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
3.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도시기본계획·수도정비기본계획·하수도정비기본계획·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
4.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
5.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

제4조(중수도의 설치 및 신고) ①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
2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
3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

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 결과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.

제5조(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) 시장은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(이하 이 조에서 “재처리수”라고 한다)의 요금을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

원가를 보상하는 범위에서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재처리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요금을 면제한다.

제6조(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)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 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사용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항은 별표에 따른다.

③ 제1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시범사업 발굴)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·홍보)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물 재이용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안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」 제8조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중수도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안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소관 실·과		하 수 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하수과장 박명섭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하수시설팀장 최진영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명규 (행정 2384)

[별표]

빗물 사용에 따른 수도사용요금 감면기준 (제6조제2항)

업종	구분	감면비율(%)
가정용		65
일반용		25
대중탕용		25
산업용		25

주) 수도요금의 감면은 당해 시설물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중 당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일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대로 감면한다. 다만, 가정용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상한으로 한다.

〈계산 예〉

- 수도급수량이 100톤, 빗물사용량이 40톤이고 감면비율이 25%인 경우
최종 요금수량은?
= 수도급수량(100톤) - 감면량($40\text{톤} \times 25\% = 10\text{톤}$)
= 90톤 (최종 요금수량)

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3144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4월 26일
제안자 : 도시환경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중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서 조례가 법령을 간주하는 경과조치는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을 벗어나므로 일부를 수정함.

□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을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함.
- 시범사업 중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3조)
- 조례가 법령을 간주하는 경과조치 규정은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을 벗어나므로 수정함.(안 부칙 제2조)

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안 제7조 중 “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”를 “시범사업을 발굴하고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와 시장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□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조례안	수정안
<u>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</u> <p>제7조(시범사업 발굴)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<u>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	<u>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</u> <p>제7조(시범사업 발굴) -----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-----</p>
부 칙	부 칙
제1조 (생 략) <p>제2조(물 재이용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안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본다.</p> <p>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」 제8종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중수도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.</p>	제1조 (현행과 같음) <p>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와 시장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</p>
제3조 (생 략)	제3조 (현행과 같음)